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0. 8

나. 제안자 : 이강호 의원외 15인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라. 상정일자 : 2010. 10. 26(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호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늘어나는 저소득주민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예산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 8일 이강호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시 도 명	조 례 명	제정일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98. 4.30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경 기 도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08.11 .5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96.11.22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07.10.10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06. 4.15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05.11.11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09. 4.15	긴급복지법에 근거

- 본 조례안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들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법적·제도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일반 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악화로 인한 빈곤심화, 가족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서민생활안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¹⁾,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보호자 및 이용자,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40,781가구와 비수급 빈곤층 11,470가구 등 총 52,251가구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현황(2010. 8월)

구 분	총 계 (가구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비수급빈곤층 가구수 현황		
		소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시 설 수급자	특 레 수급자		소 계	1인	2인 이상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52,251	40,781	73,697	38,741	66,967	3,498	2,040	3,232	11,470	7,187	4,283
중 구	2,327	1,972	3,213	1,939	3,008	150	33	55	355	285	70
동 구	2,352	1,957	3,186	1,886	3,012	54	71	120	395	322	73
남 구	7,533	6,041	10,547	5,874	9,798	473	167	276	1,492	1,094	398
연수구	5,041	4,275	8,378	4,170	7,648	577	105	153	766	566	200
남동구	8,996	7,384	13,364	6,376	11,634	173	1,008	1,557	1,612	1,130	482
부평구	13,849	9,951	17,817	9,657	16,642	675	294	500	3,898	1,912	1,986
계양구	4,072	3,079	5,560	2,916	5,178	121	163	261	993	490	503
서 구	5,064	4,026	7,825	3,889	6,945	650	137	230	1,038	670	368
강화군	2,486	1,839	3,305	1,777	2,728	497	62	80	647	513	134
옹진군	531	257	502	257	374	128			274	205	69

※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2009년 인천광역시)

※ 비수급 빈곤층 :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²⁾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

1)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의 2(차상위계층) 법제2조 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최저생계비 기준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0년도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안제3조 제3호중 “타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³⁾에 따라 자구를 “다른 법”으로 수정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고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업에 따른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의 행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제4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5종류로 규정하였음.
- 본 사업추진에 있어 향후 지원대상과 내용 그 규모 등의 결정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안제4조 제5호중 “기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구를 “그 밖에”로 수정함이 타당함.

지원내용 세부현황

지 원 내 용	추진사업	규 모	(예산액)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신입생 교복지원	3,300명	660 (시비 330)
위문금·품	설·추석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84개시설 559세대	시비 160
월동대책	향후 사업발굴 추진	신 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①비수급 빈곤층 지원(2011년) ② 저소득층 무료이사 서비스	12,000가구 100세대	시비 12,000 비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근거	신 규	

※ 자료출처 : 사회복지봉사과

3)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

라.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

-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하도록 함.
- 안제5조 제2항은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주체를 “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개요

급여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2010년 예산액
생 계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계좌입금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	149,261,032천원 (매월집행)
주 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	· 매월20일 계좌입금 ·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	34,340,511천원 (매월집행)
교 육	수급자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학 비: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12.3천원(연1회) · 부교재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4천원(연1회)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대상으로 1인당 46.6천원(학기당23.3천원 연회)	8,026,899천원 (분기집행)
해 산·장 제	조산 및 분만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시 필요한 금품지급	· 해 산 : 출산시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 장 제 :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장제를 치른자에게 500천원지급	877,228천원 (분기집행)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안영수·강병수의원
- 비수급빈곤층이란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임.

< 질 의 >

- 박순남의원
- 제도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다른 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적인 지급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급권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 의 >

- 신현환의원
- 군·구에서도 유사한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는 없는 지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조례 안제3조 제3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여 중복지원의 우려는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강병수, 박순남, 박승희, 이용범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7명)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3호중 “타법”을 “다른 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4조 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중 “본인” 앞에 “군수·구청장은”을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u>타법</u>에 의하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u>시장, 군수, 구청장</u>이 인정하는 자.</p>	<p>제3조(지원대상) 《제정안과 같음》</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 -----<u>다른 법</u>----- ----- -----<u>시장 또는 군수구청장</u>----- -----.</p>
<p>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p>	<p>제4조(지원내용) ① 《제정안과 같음》</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군수·구청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군수구청장은</u> ----- ----- -----.</p>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 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2. 위문금·품
3. 월동대책비
4.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군수·구청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